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6. 8  
제 출 자 : 배기환의원의외 6인

### 1. 주 문

- (1) 감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
- (2) 선임방법
  - 가.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
  - 나. 선임된 감사위원 대표자는 의원중 연장자로 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,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2인 및 공인회계사 1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.

### 3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5조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